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보건행정과장)
- 발의일자: 2023. 9. 1.(금)
- 회부일자: 2023. 9. 1.(금)
- 검토기간: 2023. 9. 4.(월) ~ 9. 8.(금)

2. 제안이유

- 중독 정신건강 문제 예방·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 등 중독질환의 효과적 관리에 기여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인 「달서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 12.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규모 (면적, m ²)	운영법인	비고
달서구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월성로 77(월성동) (달서건강복지관 4층)	시설규모: 410.92m ² 주요시설: 운영실, 운동·작업치료실, 평생교육실, 상담실 등	대구가톨릭 사회복지회	인원 4명

※ 연간 운영비(민간위탁금): 167,380천 원(국비:시비, 5:5)

※ 사업비(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00,000천 원(기금:시비, 5:5)

나. 위탁개요

○ 위탁내용

- 중독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 중독질환 관리사업
-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 중독 폐해예방 및 교육사업
-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2024. 1. 1.~2026.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기존 수탁업체 적격심사 후 재계약

※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75점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

4.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15조의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의2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제7조까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조기발견, 중독자 지원 등 중독질환의 효과적 관리에 기여하고 있는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2023년 12월 31일)이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4항에 따라 사무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독의 예방·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근 3년간 위탁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18개 항목 중 7개 분야에서 만점을 받고, 총점 92.1점(평가배점 100)으로 전반적으로 운영성과가 탁월하며,
- 2021년에서 2023년 7월말까지 사업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미등록자 중독상담 3,026명, 사례관리 상담 등 4,874명, 중독폐해 예방교육 97회(17,862명) 등 중독상담 및 예방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재계약은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적격심사를 거쳐 75점 이상일 경우 현행 수탁자와 계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여 수탁기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알코올, 도박, 인터넷, 약물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무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그 사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중독관리에 전문적 역량을 가진 기관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 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